

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원안·수정안조문대비표

원	안	수	정	안
제6조 (회의)		제3항1호 : 너비25미터 이상 도로(계획도로 및 간선도로를 포함하되 도시고속도로는 제외한다)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(다만 공장주거전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)	제3항1호 : 너비25미터 이상 도로 및 간선도로(도시고속도로는 제외한다)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(다만 공장주거전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)	
제13조(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)		제13조(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)		
2호 :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층수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		2호 :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		
제21조(미술장식품의 설치)		제21조(미술장식품의 설치)		
제1항1호 :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(너비12미터 이상의 도로에 2면 이상 접하는 대지를 포함한다)에 신축하는 건축물		제1항1호 :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(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면 이상 접하는 대지를 포함한다)에 신축하는 건축물		
제52조(공개공지 등의 확보)		제52조(공개공지 등의 확보)		
제1항1호 : 판매시설 10퍼센트 이상		제1항1호 : 판매시설 8퍼센트 이상		
제1항2호 : 업무시설 5퍼센트 이상		제1항2호 : 현행과 같음		
제1항3호 : 관광숙박시설 10퍼센트 이상		제1항3호 : 관광숙박시설 8퍼센트 이상		
제1항4호 : 종교시설 5퍼센트 이상		제1항4호 : 현행과 같음		
제1항5호 : 관람집회시설 10퍼센트 이상		제1항5호 : 관람집회시설 8퍼센트 이상		

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안원안·수정안조문대비표

원	안	수	정	안
제53조(온돌의 시공 등)		제53조(온돌의 시공 등)		
제1항 :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(이하“온돌 시공자”라 한다)가 하여야 한다. 다만,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		제1항 : 현행과 같음		
1호 :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		1호 : 현행과 같음		
2호 : 구청장이 시행하는 온돌시공기술교육을 이수한 자(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)		2호 : 현행과 같음		
		3호 : 특정열시공기자재의 설치, 배관 및 세관에 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.		